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5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3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조정식 · 전진숙
김 윤 · 남인순 · 추미애
전종덕 · 김선민 · 김현정
박희승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 · 당뇨병 · 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,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.

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(프랑스, 영국, 미국, 핀란드, 말레이시아, 이탈리아, 노르웨이 등)에서는 이른바 ‘설탕세’를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.

이에 가당음료를 제조 · 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뇨 · 비만 · 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).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가당음료”란 설탕, 시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를 말한다.

제22조제2항제1호 중 “부담금”을 “담배부담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당음료부담금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”를 “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(이하 “담배제조업자등”이라 한다)”로, ““부담금””을 ““담배부담금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”을 “담배제조업자등 또는 가당음료제조업자등(이하 “제조업자등”이라 한다)은”으로, “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”을 “담배 또는 가당음료의 수량 또는 용량과 산출된 담배부담금 또는 가당음료부담금(이하 “국민건강증진부담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“부담금”을 “국민건강증진부담금”으로,

“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”을 “제조업자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”를 “제조업자등은 제4항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부담금”을 각각 “국민건강증진부담금”으로,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으로, “부담금”을 “국민건강증진부담금”으로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당음료의 제조·가공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(이하 “가당음료제조업자등”이라 한다)가 판매하는 가당음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(이하 “가당음료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부과·징수한다.

1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: 100리터 당 1,000원
2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초과 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: 100리터 당 2,000원
3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3킬로그램 초과 5킬로그램 이하인 경우: 100리터 당 3,500원
4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5킬로그램 초과 7킬로그램 이하인 경우: 100리터 당 5,500원
5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7킬로그램 초과 1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: 100리터 당 8,000원
6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0킬로그램 초과 13킬로그램

이하인 경우: 100리터 당 11,000원

7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3킬로그램 초과 16킬로그램

이하인 경우: 100리터 당 15,000원

8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6킬로그램 초과 20킬로그램

이하인 경우: 100리터 당 20,000원

9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20킬로그램을 초과한 경우:

100리터 당 28,000원

제23조의2의 제목 중 “부담금”을 “국민건강증진부담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”를 “제조업자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”를 “제조업자등이”로,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”를 “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세관장에게 담배 또는 가당음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담배”를 “담배 또는 가당음료”로,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및 세관장”을 “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세관장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3의 제목 중 “부담금”을 “국민건강증진부담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부담금”을 “국민건강증진부담금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”을 “제9조의4,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당음료부담금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2條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第2條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“가당음료”란 설탕, 시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를 말한다.</u></p>
<p>第22條(基金의 설치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<u>부담금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2. (생 략)</p>	<p>第22條(基金의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담배부담금</u></p> <p>2.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<u>가당음료부담금</u>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
<p>제23조(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·징수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지방세법」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<u>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(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,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</u></p>	<p>제23조(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·징수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(이하 “담배제조업자등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</p>

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
 급되는 것은 제외한다. 이하 이
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)에
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
 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 한다)
 을 부과·징수한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가당음료
의 제조·가공업자 또는 수입
판매업자(이하 “가당음료제조
업자등”이라 한다)가 판매하는
가당음료에 다음 각 호의 구분
에 따른 부담금(이하 “가당음
료부담금”이라 한다)을 부과·
징수한다.

1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
리터 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
우: 100리터 당 1,000원

2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
리터 당 1킬로그램 초과 3킬
로그램 이하인 경우: 100리터
당 2,000원

3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
리터 당 3킬로그램 초과 5킬
로그램 이하인 경우: 100리터
당 3,500원

4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5킬로그램 초과 7킬로그램 이하인 경우: 100리터 당 5,500원

5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7킬로그램 초과 1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: 100리터 당 8,000원

6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0킬로그램 초과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: 100리터 당 11,000원

7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3킬로그램 초과 16킬로그램 이하인 경우: 100리터 당 15,000원

8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6킬로그램 초과 2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: 100리터 당 20,000원

9.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20킬로그램을 초과한 경우: 100리터 당 28,000원

② 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

③ 담배제조업자등 또는 가당음료제조업자등(이하 “제조업자

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,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「국

등”이라 한다)은-----
-----담배 또는 가당음료의 수량 또는 용량과 산출된 담배부담금 또는 가당음료부담금(이하 “국민건강증진부담금”이라 한다)-----.

④ -----제3항-----
-----국민건강증진부담금-----
-----제조업자등-----
-----.

⑤ 제조업자등은 제4항에-----

-----.

⑥ -----국민건강증진부담금-----제5항-----
-----국민건강증진부담금-----

-----국민건강증진부담금-----

세기본법」 제47조의4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.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⑦ (생략)

제23조의2(부담금의 납부담보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

-----.

⑦ -----제6항-----

-----국민건강증진부담금-----

-----.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제23조의2(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) ① -----

-----제조업자 등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제조업자등이-----

-----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세관장에게 담배 또는 가당음료-----
-----.

③ -----담배 또는 가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